

규정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규정



제정 1987. 11. 27

노동부 예규 제 142호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87.2.1부터 시행되었다.

이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특례 지역소재 사업장, 유해위험부서가 있는 사업장 등을 비롯해 작업환경이 불량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등에는 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는 것외에 향후 신설공단 지역에 대해서는 설립시부터 집단보건관리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 할 것 등을 명시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4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3조 제 3항 및 동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5조 내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과 지도감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근로자 건강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관리업무”라 함은 영 제 15조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와 법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근로자 보건교육 및 건강진단등의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하며, 업종별 대행기관과 지역별 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3. “업종별 대행기관”이라 함은 유해위험 업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지역별 대행기관”이라 함은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업

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대행지역”이라 함은 대행기관이 보건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정된 지역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일반종합병원”이라 함은 근로복지공사 산하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센타,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관련 연구소를 제외 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대행기관의 지정

제 1절 지역별 대행기관

제 3조 (지정기관의 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역별 대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관서별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수 (예규 제 134 호 별표 5)의 범위내에서 대행 기관별로 대행지역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제 4조 (지정기준의 심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 4 호에 규정된 사항 (산업보건전문성)에 대하여는 대한산업보건협회장의 의견을 서면조회하여 참고하여야 한다.

1. 규칙 제 6 조 제 1 항 각호의 첨부서류 구비여부
2. 규칙 별표 1 의 3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설비 (일반종합병원의 경우는 대행업무 전 담부서에서 이를 상시 구비하여야 함)
3. 대행지역내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체 및 근로자 수와 보건관리대행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4. 신청기관의 산업보건 업무수행 및 조사연구 경력과 그에 따른 실적등 보건관리업무

를 전문으로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부

제 5조 (지정서 교부)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한 후 대행지역을 명시한 지정서 (별지 제 1 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규정의 준수
2. 대행지역의 준수
3. 대행수수료의 준수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무소에서 지정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수를 기허 지정 완료 한 후에 접수되는 신청서는 반려할 수 있다.

제 2절 업종별 대행기관

제 6조 (대상 및 지정)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업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단일기관에 의한 보건관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의 제한없이 업종별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광업 및 채석업
2. 영 제 23 조 각호의 유해물질 사용 사업장 및 영 제 24 조 각호의 유해물질 제조, 사용 사업장
3. 연의 리사지, 광명단의 제조, 연을 사용하는 축전지제조등 연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4. 석면제품 제조사업장

작업환경개선과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직업병을
예방합시다.

5. 크롬등 중금속을 다량 취급 또는 배출하는 사업장

6. 연탄 제조업

7. 기타 전문기관에 의한 보건관리가 필요한 업종 또는 사업장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 6 조 제 1 항 각호의 신청서류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개요와 동의 여부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업종별 대행기관의 지정절차는 제 4 조 및 제 5 조를 준용한다.

제 3 절 지정의 효력 및 취소

제 7 조 (지정의 효력) 대행기관의 지정효력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대행지역은 지정서에 명시된 지역 또는 사업장에 한 한다.

제 8 조 (지정의 취소) ①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법, 영, 규칙 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위배된 때.

②지정이 취소된 대행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재지정 받을 수 없다.

제 3 장 대행업무 및 수수료

제 9 조 (대행업무) 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보건관리자의 직무(영 제 15 조 제 1 항 각호)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다.

1. 근로자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법 제 32 조 관련)

2.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법 제 31 조 관련)

3. 기타 근로자 보건교육(법 제 23 조 관련) 등 법, 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

건 관리업무

제 10 조 (대행계약) 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보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대행방법

2. 대행수수료

3. 대행기간

4. 담당의사

5.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 조 (수수료) ①지역별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경우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업종별 대행기관의 업무대행수수료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대행기관의 운영

제 12 조 (담당의사의 지명) ①대행기관은 소속 의사 1인 (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을 지명하여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은 위탁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로 하여금 영 제 15 조 제 1 항 제 8 호 및 영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대행기관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보건관리대행사업 실적 및 결산서(세입세출)와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별 대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당해년도 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 1 항의 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대행업무 담당 의사 1인당 사업량등을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 14조(휴, 폐업등) ①지역별 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대행업무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 폐업 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기 30일전에 지정서를 교부받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업종별 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규칙 제 6 조의 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요건과 대행기관의 채무 및 금품청산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5조(대행기관 운영 규정) ①대행기관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운영 규정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대행 방법
2.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이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6. 직제,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대행기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6조(협의회의 가입) 대행기관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행할 경우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와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또는 보건진단협의회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제 17조(지원대학과의 연계) 대행기관은 작업환경의 측정 평가와 직업병예방등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술교류를 위하여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또는 산업보건전문연구소등과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 5 장 지도감독

제 18조(지도감독)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설공단지역에 대하여는 공단내에 대행기관을 유치하여 모든 입주업체가 동 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공단 설립시부터 사전에 유관기관(공단관리본부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집단보건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 6 조의 3에 규정된 보건관리업무 대행의 특례지역소재사업장
2.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법 제 24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업장
3. 규칙 제 4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부서가 있는 사업장(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포함)
4. 규칙 제 3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있는 사업장
5.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발생 사업장
6. 제 6 조 제 1 항 각호의 사업장
7. 기타 작업환경이 불량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③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대행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제 3 항의 요구가 있거나 관계공무원이 대행업무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거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업무대행수수료의 상한기준

①(시행일) 이 규정은 '88. 2.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동일지역에 대하여 2이상의 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기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지역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노동관서의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이 2이상인 경우 당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기 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

2. 관내 산업보건전문 의료기관

3. 관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③(특수건강진단기관과의 관계)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동일지역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대행기관이 상이한 경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 행 업 무	근로자1인당 수수료
1. 영 제1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	월 300 원
2. 제9조 제1호의 업무 (1차 건강진단에 한함)	월 $\frac{(A+B) \times \frac{1}{2}}{12}$ 추가
3. 제9조 제2호의 업무	월 200 원 추가
4. 제9조 제3호의 업무	상호협의 추가 결정

주 : 1. A는 당해년도 일반건강진단 30세이상
자의 수가
2. B는 당해년도 일반건강진단 30세미만
자의 수가

